

딥페이크 성폭력 박멸을 위한 긴급토론회

정치,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하자!

2024. 9. 5. 목. 19시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

주최 디지털 성폭력에 함께 분노하는 정치인들

딥페이크 성폭력 박멸을 위한 긴급토론회

: 정치,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하자!

주최 디지털 성폭력에 함께 분노하는 정치인들
일시 2024. 9. 5. 19:00
장소 창비서교빌딩 B2 50주년홀
중계 유튜브 '장혜영' 채널 온라인 생중계

프로그램

기조발언 장혜영 전 정의당 국회의원,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발제 박지현 전 추적단불꽃 활동가 /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딥페이크 성폭력을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의 현 주소와 대응 방안’

토론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자

원하영 고대문화 편집위원

김수진 초등성평등교사모임 아웃박스 교사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정지혜 세계일보 기자

손수현 배우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

취지문

대한민국은 지금 디지털 성폭력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초중고와 대학을 막론한 모든 교실, 군대, 심지어 집안에서까지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팅앱에 기반한 딥페이크 성폭력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은 없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은 절규합니다. “친구도 가족도 동료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가?” 불행히도 이러한 상황은 다수에 의해 예견된 것입니다.

과거 ‘소라넷’과 ‘박사방’, ‘N번방’ 등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폭로된 후 수많은 시민들은 입을 모아 정치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지금까지 시민의 요구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을 뿌리뽑아달라고 말했지만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 TF를 해산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며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부정해온 것은 다름아닌 윤석열 정부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몇몇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이 와중에 대책 수립에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위협이 과대평가 되었다’ ‘불안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며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평가절하하는 국회의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딥페이크 성폭력을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안정과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실재적 위협이며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디지털 성폭력에 함께 분노하는 정치인들’은 딥페이크 성폭력 박멸을 위한 정치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우리 사회 디지털 성폭력의 참혹한 현 주소를 짚어보고 이러한 폭력을 박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치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성폭력에 함께 분노하는 정치인들 드림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장혜영 전 정의당 국회의원

목차

| | | |
|-------------|--|-----------|
| 취지문 | | 2 |
| 발제 | 딥페이크 성폭력을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의 현 주소와 대응 방안 : 디지털 성범죄 박멸,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박지현 전 추적단불꽃 활동가 /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5 |
| 토론 1 | 스무 살이 되던 해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자 | 17 |
| 토론 2 | 원하영 고대문화 편집위원 | 20 |
| 토론 3 | 사회는, 교실을 닮는다 : 딥페이크 사태를 마주한 한 초등 교사의 발언 김수진 초등성평등교사모임 아웃박스 교사 | 22 |
| 토론 4 | 성평등 교육 지우기가 성착취 생태계를 키운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23 |
| 토론 5 | 손수현 배우 | 29 |
| 토론 6 | 기자방 등장의 의미 정지혜 세계일보 기자 | 31 |
| 토론 7 |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 *현장발제 | 33 |
| FAQ | 딥페이크 박멸 긴급토론회 FAQ 7 | 35 |

1. 사태에 대한 규정

디지털 성범죄를 방치하는 국가에 미래는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집안에서 가족을 대상으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수를 명확히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텔레그램과 X, 디스코드 등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범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지인에 대한 배신감, 사회에 대한 불신, 하물며 경찰에 찾아가도 가해자를 잡을 수 없다는 무력감, 피해자의 일상에 붕괴를 가져오는 범죄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 국가에 미래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상황은 분명히 국가적 재난임을 선포합니다.

2. N번방 이후 5년, 무엇이 바뀌었는가

2019년 7월, N번방을 발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야 사안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N번방 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법안도 만들어지고,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생겼으며, 국민들 역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들은 수사망을 피해 더욱 철저히 숨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늘 ‘신작’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해냈습니다. 불법촬영을 비롯해, 가해자 주변에 있는 누구든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SNS를 하지 않는다고 피해 대상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가해행위를 텔레그램이라는 ‘안전’한 우리에서 저질렀습니다.

5년 사이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전보다 딥페이크 범죄가 더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일부 가해자가 다른 가해자들에게 부탁을 받거나 돈을 받아 원하는 여성의 사진을 전달하면 ‘딥페이크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AI를 이용해, 누구든지 제약없이 합성을 하는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해 처음에는 무료로 합성을 하게 해주고, 그 이후에 돈을 내거나 AI합성방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 추가 ‘크레딧’을 준다며 여성의 피해를 재화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비단 텔레그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X(구 트위터)에서도 비슷한 일들은 벌어집니다. 또 다른 플랫폼들을 이용하여 이런 행위에 대해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5년이 지났지만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기사가 된 여군방, 교사방 등은 이미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범죄입니다. 5년전보다 크게 달라진 게 없음이 한스럽습니다. 범죄 현장인 플랫폼은 해결의 주체를 수사에 잘 협조하지도 않으며 진행 현황을 따로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문제 발생시 처리에 대한 시스템이 미비한 게 대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기업이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기 까지 시간이 오랜 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가 본인의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많아 특정 자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이런 디지털 범죄들을 방관하고 있는 걸까요? 기업의 입장들은 이렇습니다. 메타의 경우 “가짜 광고 적발 시 삭제 조치하고 있지만, 해당 계정 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당했을 경우엔 개인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카톡의 경우 “사칭 피해 사실 소명을 위해 방통위 결정문이나 명예훼손 확정 판결문이 있어야 게시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글의 경우엔 “‘선삭제 후조치’를 할 경우 누군가의 지적재산권을 기업이 침해할 수 있다.”, 텔레그램은 “개인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게 기업의 방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나몰라라 일관하는 기업 역시 디지털 성범죄의 공범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순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해야 합니다. 이는 과잉규제가 아닌, 국가가 마땅히 져야할 책임이며, 국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3. 국가 대응책의 한계

9월 1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딥페이크(허위 합성 영상·사진물)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간의 '영향력 공작' 등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포털·플랫폼 사업자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에만 맡겨서 벌어진 상황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자율규제’는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해결에 한발자국도 제대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자율규제에 맡겨두는 건,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범죄를 방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성착취의 온상이 된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도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울증갤러리를 이용하던 중학생이 자살을 하며 큰 문제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도 방심위는 자율규제 강화를 담으로 내놨습니다. 자율규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까지도 우울증 갤러리를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계속 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됐습니다. 최소한 온라인 플랫폼의 의무를 법령에서 정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준수사항을 구체화해 위반 시 제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 기업이 규제를 잘 따르지 않는다면, 규제를 따르게 만드는 것 역시 국가의 역할입니다. 국내외 플랫폼 기업이 더 이상 디지털 범죄의 근거지가 되어선 안됩니다.

4. 디지털 범죄 대책 해외 사례

1) 각국의 플랫폼기업 대처

사례1. 브라질 대법원의 텔레그램 조치 명령/ X 조치 명령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2022년 3월 "브라질 내 텔레그램 사용을 중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마약 확산, 위조지폐 유통, 가짜뉴스 유통이 텔레그램 내에서 이뤄졌고 이는 브라질 사회에 큰 위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텔레그램과 접촉하려 부단히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했고 판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자 바로 텔레그램의 CEO는 사과하며 조치하겠다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2024년 8월 31일,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머스크가 각국 법에 면책권 있는 것처럼 군다며, 허위 정보 유포 계정 차단 요구를 무시한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접속 금지 명령을 내려 8월31일(현지시간)부터 브라질에서 엑스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이날 결정에서 "(엑스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브라질 주권, 특히 사법부에 대한 완전한 무시를 보였고 자신을 진정한 초국가적 실체로 설정하고 각국 법률에 대한 면책권이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례2. 독일 내무부장과 파벨 두로프의 미팅

독일 정부와 수사기관도 오랜 기간 텔레그램을 찾아 헤맸습니다. 테러 모의가 텔레그램 상에서 실시간 이뤄지고 있었고 코로나19 백신 등의 잘못된 정보가 대중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됐지만 정부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정치인이 텔레그램을 찾아 나섰습니다. 범죄 위협을 방치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서 정부와 정치인이 나선 것입니다. 낸시 페이저(Nancy Faeser) 독일 연방내무부장이 어떻게 텔레그램을 찾았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텔레그램을 2년 이상 추적해 온 맥스 호펜슈타트 독일 슈피겔 기자는 "현재도 소아 성범죄, 테러 등 일부지만 독일 정부가 텔레그램의 협조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독일 정부는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아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텔레그램이 정부에 협조할 수 있다'는 메시지만으로도 범죄는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것은 정부의 노력입니다.

사례3. 인도 뉴델리 고등법원의 판결

인도 뉴델리 고등법원에서 법원이 "범죄자의 IP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뒤 텔레그램 현지 대리인이 밀봉한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11개국 이상입니다. 수사기관의 권한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건 정치의 영역입니다. 텔레그램으로 대표되는 보안성이 뛰어난 플랫폼들의 양면성을 잘 파악하고 정치가 어디까지 개입할지에 대한 과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결국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이 있어 잘 사용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공간이 되고, 잘못 사용될 경우 범죄의 온상지가 될 뿐입니다. 텔레그램을 단순히 '악'으로만 묘사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시스템의 영속이 가능하게끔 범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가 텔레그램에서 폭증하는 마약 거래를 '표현의 자유'를 지킨다며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주요 범죄는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선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해결할 과제입니다.

2) 참고 할만한 법안

EU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은 유럽 연합이 온라인 플랫폼과 서비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법 콘텐츠, 허위 정보, 알고리즘의 투명성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불법 콘텐츠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테러 선동, 아동 성 착취물 등 심각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주일 전인 8월 31일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결정에 따르면 가상의 인물이라도 미성년자 성착취를 표현하는 딥페이크 생산물은 제작자 뿐 아니라 배포하거나 소지한 사람까지 전부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 법은 딥페이크 속 등장인물이 실존인물이 아닐 경우 불법이 아니라고 보아 처벌하지 않았는데, 주의회는 더 강력하게 규제하겠노라 선포한 것입니다. 또 지난해 미국은 ‘딥페이크 책임법’을 만들어 성 관련 콘텐츠를 통해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경우,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의 형법은 사생활 침해행위를 인격에 대한 침해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2016년 디지털공화국법을 제정했는데요. 디지털공화국법은 ‘잊힐 권리’ 등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촬영 및 기록 당시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했다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가 없었으면 비동의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성적인 내용일 때는 사생활 침해죄로 가중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프랑스는 불법 유포 대상을 성적인 사진 또는 영상물로 한정하지 않고 성적인 속성을 지닌 표현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온라인상의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서도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처럼 온라인 성폭력과 관련해 구성요건을 특정해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로 정의되는 인격권 침해행위에 성적인 속성을 가중적 성격의 구성요소로 추가함으로써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5. 여성/디지털범죄 지원 기구의 확대 및 거버넌스의 필요성

정부와 여야 정당 모두 딥페이크 성범죄가 불거지자, 디지털 성범죄 뿌리를 뽑겠다며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의 예산안부터가 감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8억4100만원으로, 올해 배정받았던 12억2800만원보다 31.5% 감액되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6.5%(9억5000여만원) 삭감된 137억3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디성센터의 직원은 총 39명(정규직 31명·기간제 직원 8명)으로, 4년째 같은 인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디성센터에 접수된 불법 촬영물 삭제요청 건수는 15만6000여건에서 24만3000여건으로 156%나 증가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자의 지원요구가 크게 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인력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피해에 대응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은 ‘사후 대응’입니다.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에 이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호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권한 및 법적 조직의 필요성 호주에서 인터넷안전위원회(Office of eSafety Commissioner)는 연방 정부 법정 기관(Commonwealth Government Statutory Authority)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정 기관은 주 정부를 대신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호주 통신미디어청과 인터넷안전위원회의 ‘2018-19 연례보고서’에서는, 삭제 요청된 이미지 기반 학대 건의 90% 정도가 처리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고, 2018년 「온라인안전강화법」이 개정되면서 이 기관의 권한은 더욱 보장받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디지털 문제 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 확장을 포함한 현안적인 인터넷 정책 문제를 전담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34명의 회원은 학제간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디지털화와 연결성의 다양한 측면을 논의하고 디지털 전환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시스템은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사후 대응 중심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뒷수습에 급급하기보다는, 사전 예방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호주처럼 인터넷안전위원회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독립 기구를 설립하고, 독일처럼 디지털 문제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구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관련 법률 개정, 기술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6.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사회는 지금껏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짧은 옷을 입지 마라’와 같은 피해자 비난적 교육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힐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만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며 온라인상에 떠도는 ‘당장’의 대처법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다 내리라는 것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을 비롯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졸업앨범의 사진을 가지고도 온갖 성범죄를 벌이는 추악한 범죄자들입니다. SNS를 하지 않는다고 피해 대상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더욱 충격을 주었던 부분은 수많은 범죄의 가해자들이 청소년이었다는 점입니다. 또 가해자가 친구이기도, 동료이기도, 심지어는 가족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미래세대를 책임져야 할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물론 마땅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가해자들을 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평생 격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 처벌 이후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마주한 지금 회복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회복적 정의란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치유와 회복에 중점을 두며 피해자의 동의 하에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역량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비판적 사고 능력, 정보 분석 능력, 디지털 윤리 의식 함양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미디어 소비/생산의 주체로서 디지털 공간에서 나와 대화하는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자정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도 필수적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디지털 시민권 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육을 비롯한 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
|-----------------|------------|--------------------------------|---|
| 권철승의원 등 13인 | 2024-07-19 | 제22조의2부터 22조의 10 신설 | 현재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 신분위장수사와 긴급신분위장수사의 통지 절차 추가 |
| 이해식의의원 등 10인 | 2024-08-27 | 제14조의2 개정 (4항 신설) |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해 성적허위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 처벌규정 신설, 상습적인 경우 가중처벌 |
| 김한규의원 등 10인 | 2024-08-27 | 제14조의2 개정 (4항 신설) |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
| 김남희의원 등 10인 | 2024-08-27 | 제14조의2 개정 (1항 수정, 4항 신설) | 반포 목적에 상관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 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 |
| 한정애의원 등 11인 | 2024-08-27 | 제14조의2 개정 (4항 신설) | 허위영상물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 |
| 황명선의의원 등 29인 | 2024-08-27 | 제14조의2 개정 (4항 신설) | 허위영상물을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그 형을 가중 |
| 정준호의원 등 11인 | 2024-08-28 | 제14조의4 신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 |

| | | | |
|----------------|------------|--|---|
| 조배숙의원 등 11인 | 2024-08-28 | 제14조의2 개정 (4항 신설) |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갈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
| 권철승의원 등 12인 | 2024-08-28 | 제14조의2 개정 (1항, 2항 개정, 4항 신설) 제14조의3 개정 (1항 개정) | 허위영상물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편집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영상물 또는 허위영상물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며,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도 처벌 |
| 이수진의원 등 13인 | 2024-08-29 | 제2조제1항 제3호의2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 |
| 이연희의원 등 11인 | 2024-08-29 | 제14조의2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14조의3 | “편집물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하며, 촬영물 또는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
| 임오경의원 등 10인 | 2024-08-29 | 안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한편, 허위영상물을 구입·저장한 자와 해당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 |
| 서영교의원 등 12인 | 2024-08-29 | 제14조의2 개정 (4항 신설) | 허위영상물등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영상물등을 반포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 |
| 임미애의원 등 13인 | 2024-08-30 | 제14조의2 개정 (1항, 3항 개정, 4항 신설) | 목적에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등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 허위 영상물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
|----------------|------------|----------------|---|
| 전진숙의원 등 11인 | 2024-08-01 | 제7조의3 개정 | 여성이족부장관이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요청 권한과 구상권 행사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 서지영의원 등 11인 | 2024-08-28 | 제7조의3, 7조의4 개정 |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 |
| 이인선의원 등 17인 | 2024-08-29 | 제7조의3, 7조의4 개정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의 삭제 지원 근거 마련,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컨설팅 업무를 구체화하고 삭제지원 등 피해자 지원 위한 업무 내용 규정 |
| 김남희의원 등 10인 | 2024-08-30 | 7조의3 개정 |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면서, 해당 촬영물의 대상으로 등장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상정보가 작성된 게시글의 삭제를 함께 지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
|----------------|------------|--|--|
| 진중오의원 등 11인 | 2024-08-26 | 제41조제1항, 제42조의3제3항 및 제76조제3항제3호 의2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에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청소년대상 범죄 예방 및 감시 의무를 부과 |
| 김남희의원 등 10인 | 2024-08-27 | 제44조의7 제3항제1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영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해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 |
| 박용갑의원 등 15인 | 2024-08-27 | 제44조의11 신설 및 제44조의7·제70조) | 포털, 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합성 영상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 |
| 우재준의원 등 11인 | 2024-08-28 | 제44조의7제2호의 2 및 제2호의3 신설 등 |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 및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
| 김장겸의원 등 23인 | 2024-08-29 |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 의3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정보를 탐지하는 노력 및 삭제 등의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 정보를 게재하려는 자에게는 표시의무 부과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 |

| | | | |
|----------------|------------|------------------------|--|
| 이수진의원 등 13인 | 2024-08-29 | 제44조의4 및 제44조의11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과 관련한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
|----------------|------------|------------|---|
| 정춘생의원 등 12인 | 2024-07-24 | 제20조제4항제3호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 김남희의원 등 14인 | 2024-08-29 | 제38조의2 신설 |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 이달희의원 등 11인 | 2024-08-30 | 제11조의2 신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범죄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 강유정의원 등 11인 | 2024-09-02 | 제25조의10 신설 |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 조은희의원 등 18인 | 2024-09-02 | 제25조의4 신설 | 야간·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적극적 수사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스무 살이 되던 해, 입춘은 지났지만 아직 코끝이 시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스무 살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자유를 즐기며 지내던 저는 한 DM을 받았습니다. “이 링크에 예림님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정말 제 사진들과 함께 온갖 모욕적인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제 이름, 나이, 거주지, 신체 사이즈와 더불어 남자만 보면 질질 싼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성희롱적 발언과 ‘좋아요’ 몇백 개 이상 달성 시 SNS 주소를 뿌리겠다는 예고까지. 이 당시 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너무나도 당연했던 저의 자유가 이날 이후로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걸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어요. 이런 일에 깊게 생각하기에 저는 너무 어렸거든요. 그러나 거듭해서 무언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링크 안에는 저 이외에도 수천 명의 피해자가 있었거든요. 딥페이크를 통해 정액과 본인의 얼굴이 합성되거나, 나체와 본인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 업로드되는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피해 사례도 있었지만 미성년의 피해자들 수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물론 저도 갓 스무 살이 된 시점이었기에 많이 어렸지만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받을 상처가 걱정됐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목소리를 내기로.

친언니가 저를 도와준 덕분에 지인 능욕 피해자 연대에 가입하고, 다양한 방송사 인터뷰를 하고, 범죄 관련 방송에 출연하는 등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작은물결이_모여_큰_파도가_되기를’ 이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며 N번방에 묻혀 수면 속으로 사라지던 지인 능욕에 대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N번방도 큰 사건이었지만, 지인능욕 피해자들의 목소리 또한 묻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함께 주목받아야 하는 사건임이 분명했으니까요.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날, 가장 처음 들은 말은 “증거를 찾아오세요.”였습니다. 지인 능욕 범죄의 특성상 제 지인의 소행일 것이라는 관점을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제 지인들을 스스로 의심하고 그들에게서 증거를 찾아오라는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범인을 잡아달라고 경찰서에 왔는데, 저보고 직접 증거를 찾아오라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던 그 때, 추적단 불꽃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에게는 다시 떠올리기도 힘든 시간들이 이어졌어요. 모르는 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제게 DM으로 온갖 폭언과 협박성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체 사진과 제 얼굴을 합성해 보내고, 어린 제 동생으로도 협박을 시작했죠. ‘너는 평생 트루먼쇼 인생을 살게 될 거야.’ ‘평생 돌아다닐 네 사진을 보며 나중에 네 동생이 커서 딸 칠 거야.’ 스무 살이었던 제가 겪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죠. 트위터에서는 저의 중계방까지 생겼어요.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든 일상이 담겨져 있었죠.

지인 능욕과 더불어 스토킹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불꽃님들께 전달하고 우리는 합동 수사를 시작했어요. 세종에서 강원청까지 오가며 범인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물론 세종청에서도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다양한 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인 능욕을 뿌리 뽑고자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수사에 진전이 없어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온라인 범죄고, 해외 사이트로 접속할 경우 추적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몇 달 간 이 사건에만 몰두했는데도 아무런 성과 없이 범인을 잡을 수 없다니요. 오직 그것만 보고 몇 달을 살아왔는걸요. 그렇게 저는 스무 살의 어린 나이에 정신과 약을 털어먹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인 능욕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면 믿으실까요? 범죄를 행한 그들은 피해를 당한 제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거라고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그저 디지털 성범죄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제 신체에 물리적 위해가 가해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처를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범죄와 피해 사실에 대해 경중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아팠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하며, 그 누구도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요. 오히려 지인 능욕은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하기 어렵고, 말 그대로 지인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주변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 범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행한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끝없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출구를 찾아 영영 헤매는 기분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힘들고 어두운 밤을 보내왔어요.

그러던 중 저는 운이 좋게도, 추적단 불꽃과 더불어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한 명의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잡지 못한 가해자가 더 많아요. 저 이외에도 아직 가해자를 잡지 못 한 피해자가 수두룩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 기억들 속에 삽니다. 계절마다 모든 기억이 남아있어요. 코끝이 시려지는 계절이 다가오면 사건을 처음 맞닥뜨렸던 겨울이 생각나요. 살짝 더워지는 여름이 다가오면 강원청에 오가며 사건에 대해 분석하고 범인을 잡으려 노력했던 시간이 생각나고요. 선선해지며 하늘이 파래지는 가을이 오면 생일인데도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울고 있던 제 모습이 생각나요. 저의 사계절은 여전히 그렇게 물들어서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로요. 저는 저와 같은 청년들의 사계절이 아름답게 물들길 바랍니다. 온라인 범죄의 특성상 잡기 어렵다는 실태는 뼈저리게 느꼈기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방할 수는 있겠죠. 더 이상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세상이 오지 않길 바랍니다. 경찰의 미온적 태도가 변화하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안고 살아가기만 해도 충분히 버겁거든요. 디지털 성범죄의 박멸이 하루빨리 찾아와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는 생기지 않길 바라요. 봄에는 꽃구경을 가고,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고, 가을에는 낙엽을 바라보며 겨울에는 눈사람을 만들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요.

끔찍한 계절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성폭력은 결코 묵인되어서는 안 되는 명백한 성범죄이며,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변명보다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해주세요.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작은 물결들이 모여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제가 고이 적어 보낸 작은 물결이 훗날 디지털 성폭력 박멸이라는 파도로 돌아오길 바라보면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교지 고대문화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원하영입니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소라넷부터 N번방까지,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은 국민적 관심을 받았으며, 2021년에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TF를 해산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딥페이크 사태는 디지털 성범죄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명백한 정부와 그리고 정치의 잘못입니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는 연예인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인까지 그 피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여성 교사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그리고 10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수라는 사실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교육 현장에서조차 기본적인 상하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학교에서는 남학생들은 축구를 하게 하고, 그동안 여학생들에게 ‘조심’하라고 ‘교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흑자는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까 두려워 자신의 사진이 드러난 SNS를 비공개 처리하는 여성들에게 ‘유난’이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될까’ 두려워하는 것은 유난이라 치부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찾아내고 그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만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책무가 끝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가해자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피해자의 회복과 응보적 차원에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일부 ‘악마 같은’ 개인의 범죄로 치부하는 것에 그친다면 딥페이크 범죄는 그 형태만 바뀌어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마치 2020년 N번방 이후 2024년 현재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처벌을 넘어 우리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가능케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개별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중심적인 우리 사회 속 여성 혐오의 명백한 결과입니다. 개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악마화하는 것은 오히려 구조적 문제를 감출 뿐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이라는 이름으로 주변 인물의 사진 혹은 불법 촬영물 등을 업로드하고 유통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능욕’이라는 단어로 알 수 있듯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소유하고자 하는 객체로 여겨질 뿐입니다. 또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통하고 돈을 벌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를

‘상품’이자 돈이 되는 ‘자원’으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결국 딥페이크 성범죄는 일부 사회 구성원, 일부 가해자의 ‘악마 같은’ 행위라기보다는, 여성을 대상화하고 일종의 상품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여성 혐오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에브리타임과 같은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22만 명’이라는 숫자가 통계적 오류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며, ‘모든 남자들이 그런 건 아니다’,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지 마라’라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저 또한 22만 명이라는 아연한 수가 그저 통계 오류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로 가해자가 22만 명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모든 남자가 그런 것은 아니니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지 말라는 말들은 피해자의 회복에도, 그리고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다수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범죄를 지금껏 암묵적으로 묵인한 것이 바로 우리 사회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끝내 함께 살아가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텔레그램 방의 모든 가해자를 잡아 평생 감옥에 보낸다고 한들 비슷한 범죄는 그 형태만을 바꾸며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 피해자와 연대하고, 또 다른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더 거대한 구조를 논하고 그에 균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출발지이자 종착지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페미니스트 교사들은 교실 내 여성혐오 문제가 심각하다고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가 불거졌다. 2016년에 초등학생이었던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 학교를 벗어났을 참이다. 또다시 벌어진 국가적 재난과 같은 성범죄 사태는, 사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교실에 옮겨붙은 여성혐오를 ‘젠더갈등’으로 치부하며 말해오지 않았던 지난 8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플랫폼 <디클>에 올해 업로드된 초등학생용 폭력예방교육 영상은 딥페이크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한 남학생이 다른 남학생의 사진을 ‘개그 사진’으로 합성하여 동의없이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친구가 불쾌하다는 표현에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는 내용이다. 이 영상은 학교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학교에서 말하는 폭력예방교육에는 ‘성폭력’이 없다. ‘동의’와 ‘존중’이라는 SNS에티켓만 있을 뿐이다. 왜 성범죄의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인지, 디지털 성범죄는 ‘젠더 기반 폭력’인지 말하지 않는다. 딥페이크 사태는 친구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같은 반 여학생을, 선생님을, 가족을 ‘능욕’할 목적으로 저지른 일이다. 그러나 교실에서 성범죄를 성범죄라고 부르지 못하는 동안, 교사들은 핸드폰 번호를 감추고, 졸업 앨범에 사진을 실지 않는 게 최선이라 여겼다.

며칠 전 아웃박스는 왜곡된 남성성과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며 딥페이크 관련 폭력예방 수업 자료를 게시했다. 한 초등교사는 해당 게시글에 “성범죄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회 구조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다. 현 딥페이크 사태를 마주한 한 명의 교사로서 ‘교육’만이 답이다 라는 태평한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과 함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정말 충분했는지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 우리는 사실 아무런 교육도 하고 있지 못했다. 오히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혐오를 방관하고 옹호하고 있었다.

교실은 사회를 닮는 게 아니라, 반대로 사회가 교실을 닮아있었다. 지금 교실에서 시작되는 논의는 5년 후, 10년 후의 사회를 구성한다. 교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2024년 초등학교 6학년인 나의 제자들이 2030년에 마주할 세상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1. 치마를 입고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며 노는 4~5세 여자아이가 속바지를 입지 않았다고 양육자를 비난하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

: 아동에게 차별적이고 퇴행적인 성별 규범의 잣대를 들이대는 작성자의 인식부터 고민하길 원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집중포화를 맞음.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래서 걱정을 해준 건데 왜 작성자에게 뭐라고 하나?”

#2. e-알리미로 도착한 초등학교 생활지도 내용.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학생들은 너무 짧은 바지를 입지 않도록 합니다”

: 학교 운영위원으로 생활지도기준안 개정에 회의에 참석해 삭제 의견을 전달. 교원위원 자격인 교감 선생님께서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요?”라며 내용의 문제점보다 양육자의 비판적인 태도에서 심기가 불편하다는 반응을 받음

#3. 자녀의 유치원 졸업식에 참석 후 유치원 교사들을 향한 배우자의 외모평가를 아무렇지 않게 농담의 소재로 삼는 엄마 양육자들

: ‘선생님’을 여성이라는 성별과 오로지 외적 평가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이를 타인들에게 거침없이 표출하는 분위기가 불편하다고 말함.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자기 앞에서는 말도 편하게 못하겠다”는 반응이 돌아옴

#4. “우등생이 만든 음란 합성 사진, 충주 A고교 발각”, “공부 잘하던 고교생들은 장난으로 만든 합성사진 때문에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다”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논조의 기사들

: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에게 해당기사와 문제인식을 공유, 단체 명의로 관련 기사들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심의 신청함.

기꺼이 일상의 ‘모난 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겪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임출육’ (임신, 출산, 육아)의 터널에서 한국의 현실을 직면했고, 결국 경력단절을 선택하는 순간 딸이 사는 세상은 달라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인간 보편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사적영역으로 치부하거나 그 책임을 성불평등하게 배분, 차별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각성이었다.

2017년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을 창립하고, 활동가로서 ‘모성’에 대한 정치적 전유를 통해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실천을 해왔다고 나를 자부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중학생이 된 딸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교 리스트를 거론하며 불안함을 호소하는 순간, 소위 ‘현타’가 왔다. 누구나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며, 그것이 나와 딸에게 직접 닥친 현실이라는 자각이 몰려왔다. 성불평등한 구조를 바꾸고자 노력했던 그간의 활동들이 머릿 속을 스쳐가면서도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권이 바뀌고 백래시가 몰아닥치면서 사회 곳곳에서 퇴행적 현상들이 버젓이 일어났다. 성차별적인 구조는 공고한데 그나마 어렵게 만들어 놓은 성평등의 토양마저 황폐화하는 시도들은 지치지도 않고 계속됐다. 마침 며칠 전 한국성폭력상담소에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판하며 <‘22만 명’ 발생 전조였던 22개 장면>이라는 웹자보를 배포했는데 1번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대통령>이다.

이밖에도 △다섯달 넘게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안하는 대통령 △일상의 성폭력 대응. 강간죄 개정 반대하던 국민의힘, 개혁신당 △학교 내 성폭력 전수조사와 학생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던 교육관료 △포괄적 성교육, 청소년 성평등 교육 막던 기독교 혐오세력 등 그간 울분을 터트리게 했던 슬한 상황들이 담겼다.

내게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을 추가로 묻는다면,

#“여성 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

- 2022년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사건에 대한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 발언.

#“좋아하는 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으로 대응을 했다”

-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관련 이상훈 서울시의원 발언.

#“신체 노출로 성범죄 급증, 그게 왜 성범죄 두둔하는 거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을 더하고 싶다.

그렇다. 우리는 알고 있다. 사진 한 장이면 성 착취물이 만들어지는 세상은 하늘에서 갑자기 푹 떨어진 것이 아니다. N번방, 지인능욕방, 웹하드카르텔 등 여성을 콘텐츠로 삼아 놀이하는 문화, 성착취물을 콘텐츠로 소비하는 세상, 이를 수익 구조화하는 현실을 계속됐다.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문제가 내게 닿기까지의 과정을 복기하며 느꼈던 문제의식을 전하고자 한다.

2024년 1월~ 독립언론 ‘설록’, ‘범인은 서울대에 있다’,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기획보도

2024년 5월 20일 MBC ‘서울대 N번방’ 사건 보도,

5월 21일 원은지(추적단 불꽃) 에디터 얼룩소에 e북으로 해당 사건 보도

2024년 8월 22일 한겨레, 경찰 주요 대학 2곳 딥페이크 조직 수사 중,

능욕방.겹지인방 등 개인별 대화방 생성 상황 보도

2024년 8월 26일 중학생 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주변 분위기와 온라인발 각종 카더라 공유**

2024년 8월 28일 정치하는엄마들 회원 긴급 간담회, 박지현 활동가

2024년 8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 ‘이것은 국가재난이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으로 혼란과 불안을 종식하라’ 제하 성명서 발표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서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정부의 텔레그램 수사 협조 불응 시 앱 다운로드 중단 등 단호한 제재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 및 수사당국의 대국민 브리핑 실시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을 촉구했다.

1.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앞서 설록이 최초 보도했던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루마씨가 직접 가해자를 특정해내고, 이를 토대로 경찰 수사 후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모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소극적 수사 의지는 텔레그램 활용 성범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 참고 <서울대 동문 딥페이크 성범죄 타임라인>¹

2021년 7월 피해자 루마에게 익명의 텔레그램 이용자에 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경찰에 신고
2022년 7월 루마, 다른 서울대 동문들에게도 복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 피해자 8명과 경찰 신고
2023년 1월 경찰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리
2023년 2월 루마와 추적단불꽃 원은지 첫 대면 만남
2023년 3월 루마가 직접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기고글 올리기 시작
2023년 4월 변호사 구해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서 제출했으나 기각
2023년 5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7월에 기각
2023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2023년 11월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2023년 12월 경찰청 국수본의 재수사 지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수사 착수
2024년 4월 48명 여성들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저지른 30대 남성 가해자 구속
2024년 5월 가해자 2명 추가 구속
2024년 6월 구속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대상으로 한 재판 시작

숨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과 반포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14조 2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마련, 2020년 6월 25일 시행됐다.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 반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 반포한 경우엔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제작이나 유포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졌는데도 숨방망이 처벌일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지난 4년 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가운데 집행유예가 34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은 24명, 벌금형은 14명,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각 2명이었다.

이런데도 경찰은 내년 3월까지 7개월 간(기간 산정의 이유는 모르겠으나)특별 집중 단속기간을 선포한 정도다. 현재 각각 42만 명, 22만 명이 참여한 딥페이크 채널들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고 최근 텔레그램

¹오마이뉴스 2024년 5월 27일 보도, "사진 올릴때 각별히 주의? 이게 경찰이 할 말인가"
[인터뷰] 서울대 동문 딥페이크 성범죄 고소인 루마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유

법인에 대해서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에 내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메일에 대한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수사 권한도 없고, 텔레그램 접속만 차단할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과의 소통을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신속 차단을 위해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 개설에 나선다고 발표하며 지금까지 솔한 범죄를 방조한 채널의 협조 메일에 무척 고무된 분위기가 보도자료에서 읽힌다. 일각의 기업의 자율성 침해 비판을 의식한 것인지, 당초 범죄 근절의 의지가 미약한 것인지 알수 없으나 단호한 제재의 입장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뽑겠다고 아니라 뿌리 뽑아 달라는 대통령부터 성착취 사회 근절에 대한 정부, 정치권의 의지를 좀처럼 신뢰하기는 어렵다.

2. 포괄적 성평등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당장 학교현장에 도입돼야 한다.

현재 교육 과정 중 초등학교는 국어교과 ‘매체’, 중.고교생은 정보교과 등에서 미디어와 디지털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 ‘미디어를 비판적, 윤리적으로 잘 사용하는 힘’을 뜻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에도 필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딥페이크 성범죄 정책은 처벌강화, 텔레그램 성범죄물 신속 대응 등 사후 대책 중심이다. 즉각적인 대응은 필요하지만, 단기 처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성착취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다. 젠더기반폭력에 관대하기 때문이다. 젠더기반폭력(범죄)의 본질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할 수 있다’는 인식에 있다. 여기에 이를 ‘장난’, ‘놀이’, ‘일탈’로 가볍게 치부하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사회 통념, 상대의 정보를 쉽게 빼낼 수 있는 기술 발달, 성범죄로 기소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학습’이 성착취 생태계를 계승한다. 이 고리들이 악순환하면서 나타난 딥페이크 성범죄는 소위 신종 범죄가 아니다. 기술의 발달로 이전보다 촘촘하고 넓게 일상에 파고들어 사회를 좀먹어가는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결국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무엇을 위해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다. 고리를 끊어내려면 기술을 비판적,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법과 여성을 존엄한 인권을 가진 동료시민으로 인식하고 안전한 관계맺음과 경계를 살피는 포괄적 성교육이 함께 필요하다.

교육당국은 개별 학교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미성년,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겹지인방 등 학교를 매개로 한 피해가 공론화되면서 각 지역 교육청이 대책으로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은 양육자 대상 어플 활용 알림이었다. 교육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온라인에 개인 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마세요”, “타인의 동의없이 사진, 영상을 찍거나 전송(게시)하지 마세요”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 대응책에 대한정보 대신 의심게시물을 112,117에 신고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경찰청과 상의하라는 것으로 채워졌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라는 퇴행적 표현 앞에선 교육당국이 정말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을 했다. 이조차도 학교에 따라 알림을 보내지 않았거나, 같은

² 한국일보 2024년 9월 4일 보도, “디지털 교육 외면한 한국 윤리의 얼굴을 잃었다”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학년에 따라 알림 발송여부가 달라졌다는 제보 사례들이 잇따랐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학생들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학생들만 모여서 교육을 했다는(남학생들은 축구를 했다) 온라인 게시글은 공분을 샀다.

필요한 것은 일상의 삭제가 아니라 엄정한 대응과 재발 방지 노력이다. 개인 사진을 올릴 때 조심하라고 하지만 구직 사이트에만도 증명사진이 필요하고, SNS를 하지 않아도 단체사진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범죄는 내가 조심한다고 예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한 대책이다. 휴대전화와 SNS사용 자체가 문제라며 결벌로 튀거나 ‘미성숙한’ 일부 청소년의 일탈로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교사 피해 방지와 대책 마련을 공고히 하되 이를 교권침해 구도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교직의 특수성, 즉 젠더화된 교육과 돌봄이 갖는 특성을 인식해 피해교사 구제 대책에는 반드시 ‘젠더렌즈’를 장착해야 한다. 일단 학교 안에 일단 떠안기는 방식은 오히려 업무부담에 대한 역작용으로 갈등의 소지가 된다는 점을 양육자로서 경험했다. 예산확보와 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업무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3. 아울러 피해자의 시각과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말의 함정을 경계하고 싶다.

이는 정작 책임져야 할 이들이 부담을 경감하거나, 책임을 방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앞서 스쿨미투 고발에 참여한 피해 학생들에게 도리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교육당국이 있었다. 또한 서울대 동문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은 사실상 직접 가해자 검거에 나서야 했다.

최근 보도된 경찰 발표에 따르면 중복되는 지인 사진을 합성, 제작한 성착취물 공유 ‘겹지방(겹지인방)’ 피해신고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88건으로 이 중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특정한 건이 24건이라고 한다.(1월부터 7월까지 297건과 비교해 피해신고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신고를 안 하던 것도 범행이 알려지는 ‘미투운동’처럼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된 것 아닌가 추정된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사적 구제를 해야 하는 상황도 참담한데 대책까지 요구받는 모습을 우리는 서지현 검사 사례를 통해 목도했고, 그마저도 제대로 된 활동마저 끝까지 보장하지 못하는 공권력의 추태를 봐야 했다. 이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며 뒷집지지 말고 당장 국가가 나서라고 강하게 몰아부쳐야 한다.

4. 숫자 프레임에 함몰되지 말자.

딥페이크 성범죄에 참여한 텔레그램 방 참가자 숫자가 22만명, 40만명이라는 보도에 대해 마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듯 하지만 실제 없는 숫자를 내세우며 “위험이 과대평가되고 있다”, “젠더팔이 그만할 때”라고 말하는 입법권력자들이 있다. 숫자로는 한 사람의 존엄과 삶이 온전히 담길 수 없다. 숫자를 이야기하는 순간 문제는 보다 간략화 된다. 피해 숫자를 줄이면 성과가 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와 범죄들에 대해 간접 노출로도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마당에 직접 피해 숫자에 매몰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필요가 없다. 대신 “피해는 통계의 정치로 측정할 수 없고 측정해선 안된다”는 진실을 알려주자.

5. 언론 보도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

일부 인터뷰를 보면 여전히 진행자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AI전문가를 초청해 “아주 핫하다”와 같이 가십성으로 대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서론에 언급했던 문제적 보도들도 마찬가지다.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2022년 4월 공표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다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에는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게 하거나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가해자 중심의 개인의견을 기사에 싣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재능 및 업적 등 사건과 무관한 긍정적 부분을 부각하는 보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를 희석하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가해자에 감정을 이입하고 면죄부를 주는 언론 보도는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

끝으로 나와 딸, 그리고 여성들은 물론 더 많은 시민들이 이같은 성착취적 현실에 분노하고 모욕감을 느끼길 바란다. 이를 통해 스스로를 지킬 힘을 찾고, 자존감을 가진 구성원으로 사회를 바꾸는 데 동참하길 희망한다. “혹여 법과 제도만으로 보호될 수 없다면 공동체적 기반과 문화를 만들어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에게겐 응원이 필요하다. 이는 실질적 연대의 힘으로 증명될 것이다. 단호하게 성착취 생태계 근절을 선언하고, 함께 행동해가자.

안녕하세요. 배우 손수현입니다.

또 일어났습니다. 아니, 드러났다는 말이 더 맞겠습니다. 소라넷 사이트와 N번방 사건 등 여러 성범죄와 결을 함께하는 성착취물이 기술의 발전을 악용하며 새로운 형태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원론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듯 보이지만, 그동안 성평등에서 의도적으로 멀어지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진정으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질구조가 어긋나는 결과로서 지진이 일어나듯 비슷한 형태의 범죄가 주기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늘 수면 밑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수면 위로 드러난 성범죄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일상 속 성차별의 결과이며 이러한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개선할 의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 들고 관련된 모든 예산을 삭감했으며 모 의원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신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며 과잉 규제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을 바라보며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사건의 본질에 닿을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성평등은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수많은 여성이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대중문화영역에 종사하는 여성 예술인은 이런 범죄와 폭력의 손쉬운 타겟이 되었습니다. 대중문화 영역에 종사하는 여성 예술인들은 드러나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입에 담기도 힘든 온갖 성희롱과 성폭력을 감당해왔고 이는 오랜 시간 묵인되어왔습니다.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세상은 여성예술인을 '현대판 기생'이라 이름 붙이며 그 직업적 인식을 훼손했습니다. 여성 예술인의 직업적 노고와 인격은 존중하는 대신 기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 자신의 판타지를 충족해줄 수 있는 대상으로 외적 요소를 품평하며 가치를 따져대기 바빴습니다.

예술의 탈을 쓰고 일어나는 성범죄가 자행된 것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마리아 슈나이더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에서의 강간 장면이 실제 합의되지 않은 채 촬영된 실제 강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그저 과거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저는 1983년 흑백영상 속 마리아 슈나이더를 보며 그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재를 떠올립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가장 따뜻한 색 블루>속 베드신을 두고서 레아 세이두는 감독의 요구사항이 상식을 벗어났다며 심리적 고문에 가까웠다는 심정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거장'이라 불리는 김기덕 감독 또한 촬영장에서 대본에 없던 베드신을 강요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피소된 적이 있고, 한 남자 배우 또한 사전 협의 없이 상대 여성 배우의 속옷을 찢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되었지만 재판부는 성추행 행위를 '배역에 몰입한 연기'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예술과 성폭력의 경계에 대한 흐릿한 인식은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딥페이크 성폭력 처벌법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딥페이크에 대해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만들 수도 있다'고 발언한 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적 행위와 표현에 대한 결정권이 당사자가 아닌 자신에게 있다는 놀라운 착각은 상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볼 수 없게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여러 과정을 거쳐 종국에 각종 형태의 성폭력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사이버보안업체 보고서는 전세계 딥페이크 피해자의 99%가 여성이고 그 가운데 53%가 한국여성이며 한국 가수와 여배우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보고서를 인용하며 딥페이크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세계적인 문제의 진앙이 한국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영역에 종사하는 여성 문화예술인을, 나아가 모든 여성을 하나의 존엄한 인격으로 대하는 일에 처절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한 사람의 여성이자 문화예술인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반추하기 위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빨래터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훑쳐보는 그림을 민족의 해학이라고 칭송하고, 김침지의 폭력을 안타까움으로 둔갑시키는 순간에 대해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손끝에 침을 발라 신혼부부집 창호지를 뚫던 '짓곳은 풍습'은 불법 촬영의 시초일지 모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폭력은 예술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문화예술에 분명 도태된 구석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돌아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형태만 바뀔 뿐 같은 곳에 뿌리를 둔 폭력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에 소속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구조를 설계하고,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막중한 역할을 우리는 정치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겐 정치의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란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단언하기 전에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는 기술, 독재와 식민지배를 비판하는 일과 여성을 존중하는 일, 동물을 먹지 않는 일 사이의 연결고리를 느끼는 기술. 저는 이런 기술을 가진 자들에게, 적어도 이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잇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에게, 그 과정을 귀찮아하지 않는 자들에게 정치를 논할 자격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딥페이크 성폭력을 비롯해 모든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자들, 언제든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공유하는 모든 시민들, 문화예술인들에게 연대합니다.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모든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랜 역사 속에 반복되는 모든 성범죄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 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데까지 나아간, ‘선을 한번 더 넘은’ 폭력 행위. 암묵적으로라도 기자는 안 건드린다는 식의 기존 분위기가 깨진 것. 기자들, 언론사가 가장 놀란 것 같고 일반인 사이에서도 정말? 기자방이 뭐하는 데? 라는 한번에 믿지 못하는 반응들. (ex. 기자들이 모여서 취재하는 방이나) 설마 딥페이크 성범죄를 똑같이 기자 대상으로 저질렀다고? 오히려 이런 반응이 있는 점에 역으로 놀란 측면도 있었음. 그 정도로 여성 기자 대상 사이버 폭력, 성희롱은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 디씨갤러리만 봐도 방송사 기자나 기상캐스터, 앵커 등의 전신샷 등을 올리며 외모 폼핑하고 성적 조롱하는 일 다반사였음. 젠더, 정치 기사 쓰는 여성 기자에겐 더 심한 공격 양상 있는 편이지만 그저 또 하나의 특성을 가진 여성으로 하나의 폴더화 되기도 함. 단지 남성들의 연대에서 함께 폼핑당하며 성적으로 소비되는 ‘여성’으로서의 의미만 남는 것. (기자라서가 아닌 여자라서)

WHY

일탈력과 반사회성의 강화 / 코어 가해자들의 연령대가 어리다(촉법소년)? 22만여명이 있던 합성봇 방 등 이번 사태의 초기 공론화 이후 대부분 방이 폭파되고 탈퇴자 늘어나는 등 극도로 움직임이 제한된 속에서 한 차례 폭파되었다가 살아난 채널이었고 그 안에 있는 파생방 중 하나로 기자 합성방이 생김. 굳이 이 타이밍에 모두의 주목이 향해 있는 중 개설된 것은 명백한 도발, 잡히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 깊은 생각이나 분별력 없이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행태가 심화되는 현상 등 반영. 현재는 이 채널 역시 폭파된 걸로 보이지만 미처 파악되지 않은 방들이 있을 가능성(상위방)

개인적 느낌

1. 딥페이크 보도하면 포르노 합성하겠다는 으름장으로 보도 위축 효과
2. 지금껏 해 오던 사이버 성폭력의 연장(이 맥락에서는 딥페이크 보도 여부는 중요치 않음). 이 방을 비롯해 다른 가해자들이 모인 방에서도 ‘여성 기자’에 대한 문제적 발언(딥페 해버리자, 평소 끌리는 기자 대보라 사진 올려봐라. 여기 (잠입한) 남기자 있으면 끌리는 여기자 사진 올려봐 등)은 종종 나오고 있었음. “지금 여기자가 여기 잠입해있으면 인스타 알려주면 있는거 허락해줄게.”, “(능욕) 해달라는데 해줘야지”, “여기자 딥페이크 방 만들까” 같은 발언은 계속 포착 중.

딥페이크 기사 안 쓴 기자 이름과 사진도 거론됨. 딥페이크 공론화 보도로 활동 움츠러들게 된 상황에 대한 양심도 있지만 여러 직군 대상으로 ‘여성’이면 저질러 오던 성폭력을 기자에게도 ‘못 할게 뭐야?’ 같은 느낌으로 하게 된 것 같음. 실제로 교사방, 군인방 등 직업으로 폴더를 나눠놓았고 이 수많은 폴더들의 유일한 접점은 ‘여성’

여성 기자들에게 미친 영향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입었는지가 가장 궁금할 수 있는데, 지금의 이런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현재까지 피해 여부 자체가 중요한가 싶기도. 양가적 감정. 이 일의 심각성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실제로 자신들의 대화가 캡처되어 기사화되는 것을 (겉으로는) 신나 하면서 즐기는 모습 보임. 물론 얼마 안 가 방을 폭파하기를 반복하는 패턴은 내심 불안하다는 의미일 수 있고 현재 같은 분위기에선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등. “기사 써봐. 내가 뉴스에 나왔네” 등의 반응 보면 보도로 인해 이들을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과대포장? 악마화(부정적 영향력 확대)가 되는 측면에 대한 우려. 기자들 역시 이 상황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게 공포심이 극대화할 가능성. 그렇다고 이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취급 할 수만도 없는 상황의 복잡성

그래도 많은 기자들이 의연하게 딥페이크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고무적, 어찌보면 당연한 것. 중요한 것은 가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부당한 공격과 협박에 보도 자체가 줄어들거나 보도하는 기자 수가 줄어들었다면 점점 더 상황은 나빠질 수밖에 없음. 이런 현상이 새롭게 나타남에 따라 오히려 보도가 더 적극적이어져야 한다고도 생각. 그만큼 일반인 피해자들에게는 더 큰 위협이 일상이 되었다는 의미. 함께 대응하고 취재하고 기사를 써서 공론화하며 정책적 사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동참하는 기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기자들 스스로를 지킬 유일한 방안이기도 함. 전선에 있는 기자가 소수일수록 타겟팅되기 쉽고 그만큼 공격 수위가 높아지며 집중포화를 소수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 이럴 때 이 이슈를 받아들이는 언론사의 진정성이 드러난다고도 봄. 그저 지금 바이럴되어 조회수를 뽐낼 수 있는 ‘이슈’의 하나로만 본다면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며 보도를 빠르게 줄여갈 것이나 진심으로 사회적 변화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팔로우 하고 있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일수록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관심을 더 환기시키고, 계속해서 기사를 더 써 내야 하는구나 판단할 것. 독자들도 그것을 보고 평가함

일반인들의 전국적, 전방위적 피해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이 능욕방을 주도했던 이들이 결국 기자방도 만든 것으로 추정됨. 기사에 나왔던 그 기자방이 없어졌다는 건 일시적인 것일뿐 아직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해야. 지금 이 순간에도 텔레그램 어딘가에서 같이 아는 지인을 찾는다는 ‘겹지인방’이 계속 운영되는 중. 눈치 보다가 저런 폴더를 하나씩 눌러갈 것임은 불보듯 뻔한 사실. 기자방은 전체 큰 빙산의 아주 작은 일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중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과 관심이 절실.

현장발제

1

‘딥페이크’란 무엇인가요?

딥페이크(Deep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타인이나 주변 지인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나체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2

‘딥페이크’성폭력의 피해는 얼마나 심각한가요?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인 ‘시큐리티 히어로’가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사이트 등에 올라온 영상물 9만 5,820건을 분석한 결과 영상에 등장한 개인의 53%가 한국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같은 보고서에 의하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99%는 여성이고 94%는 연예계 종사자입니다. 2022년 3,725건이던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2023년에 2만 1,019건으로 464% 증가했습니다.

다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내 딥페이크 피해는 대학생, 군인, 교사, 기자, 초·중·고교생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024년 8월 27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딥페이크 실태조사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2,492건이었고 직·간접적 피해 사례는 517명에 달했습니다. 교육부에 올해 1월부터 8월 27일까지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신고 건수는 196건입니다.

국가의 일관된 수사 및 처벌 의지 부족을 주된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번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를 ‘신종’ 디지털 성폭력이라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N번방 방지법’을 논의하던 시기부터 새로운 기술과 결합된 디지털 성폭력 피해와 그 확산에 대한 우려는 존재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입법의 시작일 뿐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N번방 방지법’ 도입 이후 수반되어야 할 행정적·입법적·사법적 노력을 게을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운영중이던 정부 내 디지털성범죄등대응TF를 해산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국회는 관련된 보완 입법에 미진했고 사법부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많은 경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가운데 실형을 받은 비율은 단 9.37%에 불과합니다. 국가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의 각 영역에서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

텔레그램은 해외 플랫폼이라서 규제할 수 없다는데 대책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요?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브라질 대법원은 텔레그램이 각종 범죄 행위 수사를 위한 브라질 연방 경찰의 반복되는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자 “텔레그램이 브라질 당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허위 정보가 포함된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았다”며 텔레그램 앱의 즉각적 차단을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는 하루만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경찰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같은 해 독일 내무부 장관 낸시 페이저도 온라인에 “텔레그램을 찾았다”는 글을 올리며 다양한 정보자산을 동원해 텔레그램 운영진에게 접촉한 결과, 제한적으로나마 텔레그램으로부터 독일 당국과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낸 사실을 알렸습니다. 2023년 기준 텔레그램에 법적·경제적 제재를 가한 나라는 11개국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가의 제재 및 협력 의지입니다. 현재의 디지털 성폭력 실태는 ‘국가비상사태’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기에 지금은 안 되는 핑계를 나열할 때가 아니라 되는 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데에 집중할 때입니다.

5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폭력 박멸을 위해 어떤 입법적인 대안이 필요한가요? 대책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요?

전방위적 입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단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합니다. 현재 불법촬영물의 제작·배포·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관련 규정은 미비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국내외 플랫폼으로부터 수사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규제 근거가 필요합니다. 수사와 처벌을 위한 입법적 보완 외에도 성폭력 및 성차별 예방을 위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관련 법과 정책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6

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입법은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가 성차별과 성폭력의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입법이 가지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딥페이크 성폭력으로 여론이 들끓는 지금은 디지털 성폭력 엄벌을 외치지만 정작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정치,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기는 커녕 사안의 중요성을 자꾸 축소하는 정치를 그대로 방치하는 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당과 진영을 넘어선 모든 정치세력이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쇄신의 보편적 의지를 보이고 구체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7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연이어 보도되는 참혹한 소식에 마음이 꺾이는 순간도 있지만 그럼에도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